

영등포구의회
제17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9. 10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6호로 2013년 9월 3일 정선희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조례 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와 상해의 기준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변경함
(안 제5조)

나.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무원연금법시행령」 제45조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“폐질 등급”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“장애등급”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참 고 자 료

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

제45조(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)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(이하 "장애등급"이라 한다)은 별표 3과 같으며,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. 다만,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2 지방자치법

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 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5조(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

려하여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·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(이하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3. 의무직공무원 1명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

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
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